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년 1월 12일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법제11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라 함은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석유는”으로, “유탄유 및 유탄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탄유, 유탄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본문중 “동력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을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명세서

제8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5항)중 “영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소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신고”를 “석유판매업의 신고”로 “사본을 첨부하여”를 “사본을 첨부(이동판매소 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시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석유제품(용제를 포함한다) 공급계약서 사본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계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등유·아스팔트”를 “등유·나프타·아스팔트”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계약기간 1년미만의 수입계약을 제외한다.

제11조의2 본문중 “법제16조의2제1항 및 영제11조의3제1항”을 “영제11조의3제1항”으로, “동력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부과금 징수의 제외대상자) 영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11조의2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4(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영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이 징수유예되는 경우 및 석유판매업자가 영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으로 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에 당해 징수제외, 징수유예 또는 납부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부과금 영수필통지서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한 때에는 석유의 통관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본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 1.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비교란중 “제5호 내지 제13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동표의 2.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의 제2호중 “제9호 내지 제14호”를, 제9호 내지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동표의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의 제6호중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9호 내지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석유제품 품질기준 (제11조의2제2항관련)”을 “석유제품 품질기준(제11조의5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2. 자동차용 휘발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 적당한 품질의 정제광유로서 외관상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목 | | 종류 | 1호 | 2호 |
|----------------------------------|-------------|----|-------------|------|
| | | | | |
| 옥 탄 값 | 리서취법 | | 91이상~96미만 | 96이상 |
| | 모터법 | | 83이상~87미만 | 87이상 |
| 분류성상 | 10%유출온도(°C) | | 70이하 | |
| | 50%유출온도(°C) | | 125이하 | |
| | 90%유출온도(°C) | | 190이하 | |
| | 중 류 점(°C) | | 225이하 | |
| | 잔류량(부피 %) | | 2.0이하 | |
| 물과 침전물(부피 %) | | | 0.01이하 | |
| 동관부식(50°C 3hr) | | | 1이하 | |
| 중기압(37.8°C)(kg/cm ²) | | | 0.45~0.85이하 | |
| 산화안정도(분) | | | 480이하 | |
| 검(mg/100ml) | | | 5.0이하 | |
| 황분(mg/100ml) | | | 0.01이하 | |
| 색 상 | | | 노란색 | 착색 |
| 납(g/ml) | | | 0.013이하 | |
| 인(g/ml) | | | 0.0013이하 | |

| 위 반 사 항 | 해당법령조문 | 처 분 기 준 | | |
|--|----------------|---------|---------|-------------|
| | | 1 회 | 2 회 | 3 회 |
| 1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 법 제13조 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3월 | 석유정제업의 허가취소 |
| 17.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13조 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3월 | 석유정제업의 허가취소 |

2. 석유수출입업자의 보고

| | | | |
|-------------------------------------|------------------|--------------------------|--------|
| 가. 석유수출입업자의 전월중 석유수출입실적 보고 | 통상산업부장관 |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 매월 15일 |
| 나. 용제수입업자의 전월중 수입실적, 판매실적 및 거래상황 보고 |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 매월 15일 |

- 비고 : 1. 옥탄값은 리서취법 또는 모터법중 택일하여 시험한다.
2. 추운기후에서 사용할때의 증기압의 상한은 0.98로 한다.
3. 검은 세척한 현존점을 말한다.
4. 2호의 색상은 1호와 구별할 수 있도록 착색하여야 한다.
5. 첨가제의 종류 및 허용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균용장비 및 수출용차량등 특수용도에 한하여 납함량이 0.3g/l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색상은 착색하여 1호와 2호가 구별되어야 한다.

[별표 3]의 1. 정기보고사항의 2. 석유수출입업자의 보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에 4. 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가. 일반대리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 구 | 분 | 계약상대 업체명 | | | | | |
|----|------------------|----------|--|--|--|----|---|
| | | | | | | 기타 | 계 |
| 전반 | ○계약체결 업체수 | | | | | | |
| 기말 | ○계약후 영업 업체수 | | | | | | |
| 금반 | ○신규허가 업체수 | | | | | | |
| | ○사업개시 신고업체수 | | | | | | |
| 변동 | ○계약상대 변경업체수 (순증) | | | | | | |
| | - 전입업체수 | | | | | | |
| 사항 | - 전출업체수 | | | | | | |
| | ○폐업업체수 | | | | | | |
| | ○휴지업체수 | | | | | | |

| | | | | | | | |
|----|-------------|--|--|--|--|--|--|
| 금반 | ○계약체결 업체수 | | | | | | |
| 기말 | ○계약후 영업 업체수 | | | | | | |

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현황

| 구 | 분 | 계약상대 업체의 대표 | | | | | |
|----|------------------|-------------|--|--|--|----|---|
| | | | | | | 기타 | 계 |
| 전반 | ○계약체결 업체수 | | | | | | |
| 기말 | ○계약후 영업 업체수 | | | | | | |
| 금반 | ○신규허가 업체수 | | | | | | |
| | ○사업개시 신고업체수 | | | | | | |
| 변동 | ○계약상대 변경업체수 (순증) | | | | | | |
| | - 전입업체수 | | | | | | |
| 사항 | - 전출업체수 | | | | | | |
| | ○폐업업체수 | | | | | | |
| | ○휴지업체수 | | | | | | |
| 금반 | ○계약체결 업체수 | | | | | | |
| 기말 | ○계약후 영업 업체수 | | | | | | |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

제1조 본문,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조의2 본문, 제5조제1항및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별표 2]의 1. 운할유의 본문 단서, 5. 용제의 다목 표 하단의 단서, [별표 3]의 1. 정기보고사항의 표중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나목의 보고받는 자란, 2. 수시보고사항의 표중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의 보고받는 자란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서식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동

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신란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관련)

| 위 반 행 위 | 관 련 법조문 | 석유정제업자 | | 석유판매업자 | | | 석 유 수출입 업 자 |
|---|----------------------|---------|---------|-----------|------------------------|-----------|-------------|
| |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도매업인 판매업자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포함) | 소매업인 판매업자 | |
| 1.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 법제19조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천만원 |
| 2. 통상산업부장관이 명한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법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200만원 (주유석유소비자는 이에 준함) | 100만원 | 2천만원 |
|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법제19조 제3항, 법제12조 제4항 | 1천만원 | 6백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법제10조 | 1천만원 | | | | | |
| 5.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수출입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법제11조 제3항 | | | | | | 1천만원 |
| 6.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폐지 및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법제14조 | 1천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600만원 |

에너지 절약은 우리 손으로 부터